



‘전문약품은 공공재입니다’

대한약사회

문서번호 대약 제2021-0313호

시행일자 2021.3.30

수신 제약회사 대표이사

참조 안전관리책임자

제목 20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 실시간 온라인 교육 개최 안내

1. 「약사법」 제37조 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 2에 의거,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 이내에 16시간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2014.10.1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본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제4항에 의거, 식약처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집체교육이 불가능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명 : 20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 실시간 온라인 교육
- 일 시 : 2021.4.29(목)~4.30(금) 09:00~18:00 (2일, 16시간)
- 대 상 : 안전관리책임자(식약처 신고 등록한 자) 또는 교육 희망자
-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고수리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해야함
- 교육비 : 180,000원(부가세 없음)
- 미이수 : 과태료 50만원(약사법 제98조 제1항 제4호의 3)
- 프로그램 : 별첨
- 문의 : 02-3415-7650

- 첨부 : 1. 교육 세부내용 1부.
2. 프로그램 1부. 끝.

대한약사회장



담당 정책학술팀 김영희 과장

팀(국)장 : 정명찬 부국장/ 사업2국 : 진윤희 국장

주소 우 06708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4(서초3동 1489-3)

전화 02-3415-7629

팩스번호 02-585-7630

e-mail kyh0614@nate.com